

#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

## □ 유통개선조치 사항

- (법률 근거) 「공중보건 위기대응법」 제19조
- (조치 대상자) 약국
- (조치 대상 제품)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'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제품
- (유통개선 조치 내용)

### 조치사항

- ① 1인 1회 구입 개수를 **5개 이하로 제한**하여 판매
  - ② 날개로 소분하여 판매 가능. 이 경우 **날개 판매 매뉴얼 준수**
  - ③ **온라인 판매 금지**
  - ④ 식약처장이 명하는 경우 다음날 12시까지 유통개선 조치 결과 보고
  - ⑤ **소비자 판매가격 6,000원(부가세 포함)**  
※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단위(1개,2개,5개)로 기 공급한 제품은 적용 제외
- (조치기간) : '22. 2. 13.(일) ~ '22. 3. 31.(목)  
※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  - (위반시 처분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